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19가합403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강대희, 박한진, 전효철, 서하윤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변론 종결 2022. 3. 10.

판결 선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207,000,000원, 보증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5. 6.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액을 207,000,000원(이후 153,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15. 6. 26.(이후 2019. 6. 21.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6. B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90,000,000원, 보증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5. 8.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액을 90,000,000원(이후 65,7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15. 8. 25.(이후 2019. 8. 3.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B는 위와 같이 제1, 2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가 B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권리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 비용(대지급금 등)을 B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B는 2018. 10.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 접수 제56621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B가 2018. 12. 13. 이자 등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22.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54,761,402원(=원금 153,000,000원 + 이자 1,761,402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66,373,758원(=원금 65,700,000원 + 이자 673,758원), 합계 221,135,16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14037호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7. '피고들(B와 그 대표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554,252원(=대위변제금 221,135,160원 + 대지급금 1,419,092원) 및 그 중 221,135,160원에 대하여는 2019. 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정본이 2019. 3. 25. B에게 송달되어 2019. 4. 9.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 사건 건물은 2019. 3. 5. 멸실되어 2019. 4.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9. 11. 27.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E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7. 1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주식회사 E)와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위 피고는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의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권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B가 위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것이라는 점이 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B의 소극재산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B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및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담보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B에 대한 누적 매출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피고와 B는 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고는 그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201953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시점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2. 22.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10. 31. 이후이긴 하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B는 이미 제1, 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에 대한 운송료 및 대여금 채무를 비롯하여 B의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총액이 약 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정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0일도 채 안 되어 B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자 등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여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4, 15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마포구청·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G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107,979,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46,356,900원으로서, 그 합계는 1,154,335,900원이다.

(3)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21,135,160원(원금),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245,000,000원, I에 대한 구상금 채무 35,000,000원,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0원,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 채무 275,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826,000,000원, 피고에 대한 운송료 및 대여금 채무 916,338,720원, 합계 2,818,473,880원이다.

나) 한편 B의 적극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 L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 위 K, L은 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신축 예정인 25평형 아파트 1채와 35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이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019. 11. 27. 기준으로 22억 1,0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건물이 아직 멸실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당시 아직 건축 예정이던 위 아파트 2채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② 위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산정된 것으로서 B의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과 근접한 2019. 2. 9. 기준으로 776,058,000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1,107,979,000원에 매각되었음에 비추어 본다면, 위 매각대금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의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시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에 대하여 약 9억 원 상당의 운송료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의 B에 대한 누적 매출액(그 전액이 운송료인 것으로 판단된다)이 2015년경 약 8,000만원에서 2018년경 약 9억 3,900만원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와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까지 지속적인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가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었던 사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756,0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에 의하면, B의 채무를 오로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들로만 한정한다면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B에 대한 누적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미수금 운송료가 2018. 10. 31. 기준으로 766,338,720원이어서, 그 당시 B에 대한 누적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미수금 운송료 채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는 2016. 7.까지는 B로부터 운송료를 적절히 지급받아 그때까지의 미지급 운송료 채권을 약 1억 원 정도로 유지하여 오다가, 2016. 8.부터 2018. 3.까지는 운송료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여 그 미지급 운송료 채권이 710,947,700원 상당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 피고의 B에 대한 운송료 채권이 2018. 10. 31. 당시 766,338,720원에 달하였음에도, 피고는 여기에 더하여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총액이 약 9억 원 상단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고가 B에게 담보권 설정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2015. 8. 25. 그 설립등기를 마친 이후 2015. 9.부터 2018. 10. 31.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B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데, 2018. 10. 31. 위와 같이 B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B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B는 2018. 12.경에는 이미 사무실을 비우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직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4) ① B의 대표자인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가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의 대표자인 M와 약 2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M에게 피고의 설립을 제안하여 M로 하여금 피고를 설립하게 한 이후 명목상으로나마 피고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② 위 C은 피고가 설립될 무렵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2018. 10. 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점, ③ 피고의 본점 주소는 2016. 3. 1.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후인 2018. 11. 14.까지 B의 본점 주소와 같았다는 점 등 피고와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756,000,000원이고, 여기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을 합하지 않고 피고의 운송료 및 대여금 채권액 916,338,720원만 합하여도 B의 채무액이 약 16억 7,200만원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B의 재정상태를 만연히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취소의 범위

1) 관련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구상금 채권 원리금은 322,640,631원(=대위변제금 221,135,160원 + 대위변제일 2019. 2. 22.부터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2019. 3. 25.까지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1,938,719원 + 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2. 3. 10.까지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 98,147,660원 + 대지급금 1,419,092원)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74,287,26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위 구상금 채권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다른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미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8601호)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며(같은 법원 2021나84715호), 위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1876호), H 주식회사 역시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0683호)을 제기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2020. 5.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040호로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태일

판사김승현

판사오민관

별지